

## 10. 공개강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학칙 제9장 제49조 및 5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1.7.1. 자구수정)(2021.6.22. 개정)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공개강좌라 함은 정규의 교과과정과는 별도로 학술연구, 직무훈련, 기술습득, 교육증진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6월 이내의 연수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공개강좌의 개설)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본부 부(과)처 (2008.9.1.자구수정)
2. 대학원 (2017.12.15. 항 추가)
3. 부속연구기관

제4조(개설승인)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공개강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강좌개시 예정일 1월 전에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(제목)
3. 강좌의 과목 및 강사의 성명
4. 강좌개설시간 및 장소
5. 수강생의 자격
6. 수강생의 선발기준
7. 학급편제 및 수강생 정원
8. 강좌이수의 사정기준
9. 수강료 및 예산서
10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5조(수강생의 선발) 공개강좌를 개설하는 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선발기준에 따라 수강생을 선발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수증명)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강좌별로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이수증서를 줄 수 있다.

제7조(결과보고) 공개강좌를 마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